기자브리핑 참고자료

무역위원회 25주년 성과와 시사점

2012. 6. 28

무 역 위 원 회

목 차

Ⅰ. 검토배경 ····· 1

Ⅱ. 25년의 성과와 평가 ····· 2

Ⅲ. 향후 전망과 과제 ····· 6

별첨1. 우리나라 무역구제조사 동향 ····· 9

별첨2.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····· 10

별첨3. 주요국의 무역구제제도 개선 현황 ····· 11

별첨4. 무역위원회 주요 판정사례 ····· 12

Ⅰ. 검토배경

□ 80년대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사후적 수입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'87년 무역위원회를 설립

○ **(제도)** WTO 출범('95), OECD 가입('96), 한-칠레 FTA('04)를 시작으로 FTA의 본격적 추진 등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무역구제제도도 발전

① **(조직)** 상공부 자문위원회 ⇒ 독립 위원회('87)
② **(반덤핑·상계관세조사)** 관세청 ⇒ 무역위원회 일원화('96)
③ **(세이프가드조사)** 국내법 근거('86), 對중국 특별SG('02), FTA 양자SG('04)
④ **(불공정무역행위조사)** 특허권 등 지재권 침해유형 확대('89), 국내법령상 보호되는 지재권 포함('93),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유형 확대('01), 시정조치에 수출입·판매·제조 중지·반입배제·폐기처분 등 규정('01)
⑤ **(법체계)** 관세법·대외무역법 ⇒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('01)
⑥ **(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)** 교역상대국 제도·관행 조사의 법적근거 마련('04)

○ **(운영)** 산업피해구제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고, 수출중심 산업정책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

□ 산업구조 고도화, 美·中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, 무역 1조불 달성 등 무역규모 확대는 무역구제정책의 새로운 변수

○ **(수출상품 구조 변화)** 80년대 1차산품(11.7%)·경공업제품(46.4%)이 수출의 58.1%를 차지했으나, '10년에는 중화학제품이 91.2%를 차지

○ **(FTA)** 한-미 FTA를 거점으로 농산물·서비스시장의 본격적 개방으로 관세장벽 등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의 기능 약화

○ **(무역규모 확대)** 무역 1조불 달성 등 무역규모 확대로 지재권침해·원산지 표시위반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 증가

◈ 지난 25년간 무역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 무역구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을 모색

Ⅱ. 25년의 성과와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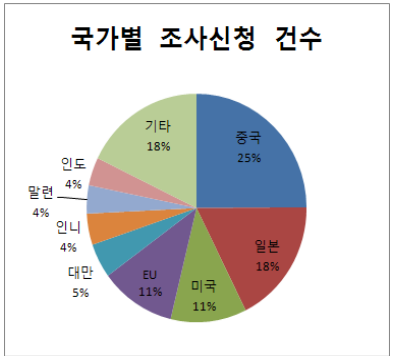
1 덤핑방지관세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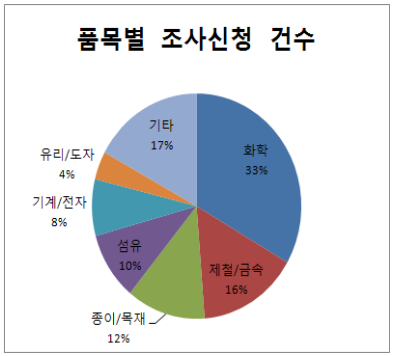
□ **(개념)**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(자국내판매가격 등)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는 제도

□ **(실적)** '87~'11년까지 총 123건의 조사신청이 있었고, 이중 81건(65.9%)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

○ 품목별로는 화학, 제철/금속, 종이/목재 등 장치산업 분야에 집중

○ 조사대상 국가별로는 중국(25%), 일본(18%), 미국(11%), EU(11%) 順





□ **(평가)** 산업피해구제를 위해 "필요최소한도로 관세부과(최소부과원칙)" 조치를 하는 등 조사·판정의 공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

○ 다만, FTA 등 시장개방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운용방향의 변화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

- 중소기업들의 이용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서비스 개선이 필요

○ 사업화 초기단계 산업 보호수단(retardation)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,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부품·소재산업에서 유용할 전망

2 세이프가드제도

□ **(개념)**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,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대응조치(관세율 인상·수량제한 등)를 취함으로써 국내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

*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, 반덤핑·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

□ **(실적)** '87~'11년까지 총 33건(품목 기준)이 제소되었고, 그 중 67%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

○ 전체 76%(25건)가 '94년 이전에 제소되었고, WTO 출범('95) 이후에는 8건이 제소('00년 이후 제소는 2건)

○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16건(48%)으로 가장 많고, 수산물·기계·화학제품이 각 3건(27%)임

<참고>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사례

○ 당시 무역위는 긴급관세부과를 건의, 재경부는 냉동마늘에 285%, 깐마늘에 60%의 관세를 부과('00.6.1～'03.5.31)

○ 이에 중국은 한국 휴대전화, 폴리에틸렌에 잠정수입중단 조치 시행

-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할당물량 조정 및 적용기간을 5개월 단축('00.6.1~'02.12.31)하기로 합의('00.7월)

* 중국산 마늘 수입액(898만불) ⇔ 한국산 휴대전화, 폴리에틸렌 수입액(5억불)

□ **(평가)** FTA 체결 확대에 따라 다자세이프가드는 명목상 안전장치가 되고 양자세이프가드가 실효적 역할을 할 전망

○ 양자세이프가드는 관세인하를 정지하거나 양허이전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다자세이프가드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지만,

○ 개방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수

있는 주요한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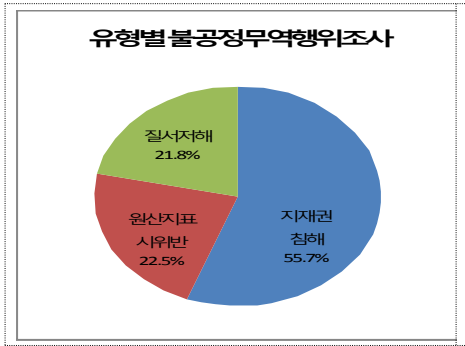
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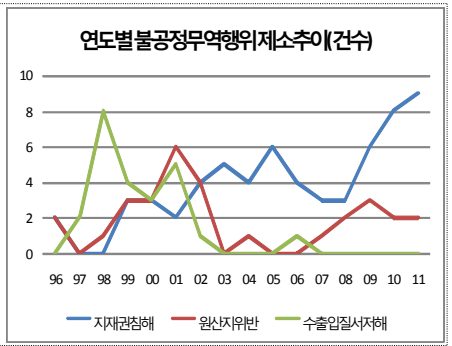
□ **(개념)** 지재권 침해물품,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·판정하고, 시정조치*나 과징금 부과

* 수출·수입·판매·제조행위의 중지,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, 정정광고,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

□ **(실적)** '87~'11년까지 총 307건의 조사신청이 있었으며, 이중 32.7%에 대해 수입·제조 금지 등 제재조치

○ 유형별로는 지재권침해조사(55.7%)가 가장 많고, 원산지표시위반(22.5%), 수출입질서저해(21.8%) 順





○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,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

①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(지재권, '04) : 연평균 거래금액의 2% → 30%
② 조사개시 결정 기한 단축(30⇒20일), 판정시한(조사개시일부터 6월내) 신설('08)
③ 우회수입 차단을 위한 旣판정물품 확인제도 신설('08)
④ 중요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신설('08)
⑤ 지재권 침해물품 해외공급자에 제재규정 신설('10)

□ **(평가)** 선진국은 후발주자에 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무역과 연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지재권분야 조사 증가는 전세계적 추세

○ 6개월내 신속한 판정 및 수출입 금지·폐기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여,

○ 국내에서는 특허권·상표권 등에 이어 '영업비밀 침해물품조사'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

4 주요국가와 교류협력 확대

□ **(현황)** 수출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피소도 증가

○ 최근에는 미·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인도·터키·태국·인니 등 개도국의 제소가 증가 추세

* 신규제소(건) : ('06) 14 → ('07) 20 → ('08) 17 → ('09) 18 → ('10) 18 → ('11) 18

○ 中·EU와 매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를 개최, 베트남·인도와 `10년부터 협력회의를 시작

- 무역구제분야 유일한 국제포럼인 "서울국제포럼"을 매년 개최

□ **(평가)** 美·EU 등과 FTA 협정에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및 사전협의 절차 등 도입

○ 한국 기업에 대해 장기간 지속되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의견교환, 공식적 조사개시 이전의 사전협의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

5 산업경쟁력조사(industry competitiveness report) 제도

□ **(현황)** '02년부터 미 무역위원회의 산업경쟁력조사를 벤치마킹하여, 수입증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분석

○ 가구, 철강제품, 신발 등 '02~'11년까지 총 69개 품목을 분석

○ 도자기질 타일은 산업경쟁력조사 분석을 토대로 반덤핑 조치와 연계

□ **(평가)** 산업경쟁력조사 품목의 대부분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양산업, 소기업 제품 등으로 FTA에 따른 분석체제로 변환 필요

○ 분석대상을 FTA 등 개방정책에 따른 주요 민감품목들로 변경하고

○ 분석내용도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분석이 아닌 무역정책의 영향 즉 전후방 산업의 분석, 생산-가공-수출의 연계 등 폭넓은 접근 필요

Ⅲ. 향후 전망과 과제

1 **(무역환경 전망)** 세계 무역규모는 FTA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무역구제제도는 공정경쟁의 장(level playing field)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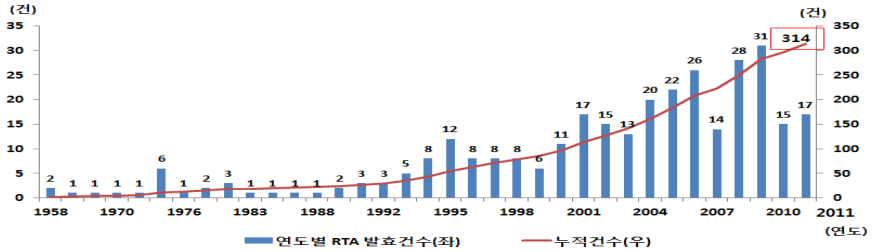
○ 우리의 무역규모는 '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'11년 1조불을 달성하였고, 이러한 신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할 전망

○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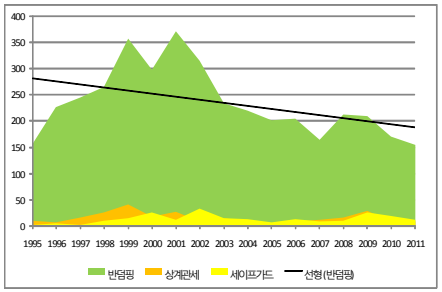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'04년 한-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FTA를 체결, 전세계 RTA(regional trade agreement) 314개가 발효 중('11.10월)

< 전세계 FTA 발효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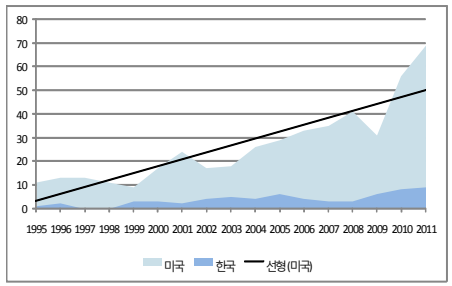


○ 무역분쟁은 덤핑,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허 등 지재권침해 분야로 전환 추세 지속

< 반덤핑/상계관세/SG 조사(WTO) >



< 지재권 침해조사 (韓+美) >



2 **(정책적 함의)**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은, 국내산업 안전장치로서 무역구제제도도 FTA체제로 변모함을 의미

○ FTA발효후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산업피해도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분석 기능과 무역구제제도의 적기 결합 중요

○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범위가 1차산업 전반으로 늘고, 中·日과 FTA체결시 중소기업 제품 전체로 확대

○ 원산지 표시위반물품, 지재권침해물품 조사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불공정물품의 수입차단에 대한 산업의 수요는 계속 증가

3 **(과제)**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는 무역구제제도 보완·발전 필요

① 무역구제제도의 보완

○ **(반덤핑)** 그동안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위주로 운영해왔으나,

-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부품·소재산업 등의 산업 보호수단(retardation)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

i) **실질적 피해**(material injury) : 현재 성숙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유발
ii) **실질적 피해 우려**(threat of material injury) : 가까운 미래에 국내 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
iii) **실질적 지연**(material retardation) : 사업화 초기단계의 제품출시 등 지연

○ **(세이프가드)** FTA협정상 '양자세이프가드'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각국 운용사례 분석 및 국내 제도운용기반 마련

- 美·中 등 거대경제권과 FTA체결로 인한 수입급증시,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고 국내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

○ **(불공정무역행위조사)** 상표권 및 특허권 외에 향후 영업비밀 침해물품 조사 수요*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사역량 확보

- 그간 영업비밀 침해물품은 경찰청에서 주로 수사해왔으나, 침해물품 수입 차단이 없이는 실효적 기업구제가 어려워 무역위원회 판정이 중요

＊ 경찰청 수사 검거건수: ('08) 72건 → ('09) 46건 → ('10) 40건 → ('11) 84건

○ **(양자 협력채널)** 미·EU 등과 FTA협정상 의무화되어 있는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및 정례회의를 협력채널로 적극 활용

- 무역위 조사·판정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무역규제를 최소화하도록 조사개시前 사전협의 절차 등 활용 가능

② 무역구제 기능 활성화

○ **(사전 분석기능 확대)** 단계적 관세철폐 등 개방에 따른 품목별·업종별 영향을 점검하도록 산업경쟁력조사의 재설계 및 사전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

○ **(중소기업 이용활성화)**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이용을 높이도록 절차 간소화, 상담 등 지원서비스 개선

○ **(전문성 강화)** 특허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여 조사기법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

○ **(조사제도의 실효성 강화)** 국내 산업피해구제 수준의 합리화,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

별첨 1 우리나라 무역구제조사 현황

□ 전체 개요

(단위 : 건)

구 분		'87~'94	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계
반덤핑	전체	13	3	10	11	4	6	8	6	11	7	5	4	6	8	3	6	6	6	123 (71)
	원심	12	1	7	11	1	4	4	1	4	7	3	3	3	6	2	1	2	1	73
세이프가드		25	1	3	–	1	1	–	1	1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33 (22)
불공정		180	5	4	2	9	10	9	13	9	5	5	6	5	4	6	9	10	11	307 (98)

＊ 당해연도 신청 기준, () 안은 조치건수

□ 반덤핑조사

① 대상 품목별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화학	기계전자	종이목재	섬유	제철금속	유리도자	기타	계
조사신청	41	10	15	12	19	5	21	123
조치 중	3	0	3	2	2	2	1	13

② 대상 국가별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중국	일본	EU	미국	대만	인니	러시아	싱가폴	인도	말련	태국	캐나다	기타	계
조사신청	56	40	25	25	12	10	8	8	9	9	7	5	11	225
조치 중	12	3	1	2	2	1	1	1	3	2	1	2	–	29

□ 세이프가드 조사

(단위 : 건)

~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계
26	3	–	1	1	–	1	1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33

□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(단위 : 건)

구 분		'01이전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계
지재권 침해	상표	88	1	–	–	4	–	1	–	1	3	1	99
	특허	6	2	4	3	1	4	1	1	2	3	7	30
	실용신안	–	–	–	–	–	–	–	1	1	1	1	4
	디자인	7	–	–	1	1	–	1	1	2	1	–	14
	저작	12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12
	영업비밀	2	1	1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4
	소계	**115**	**4**	**5**	**4**	**6**	**4**	**3**	**3**	**6**	**8**	**9**	**171**
원산지 위반		54	4	–	1	–	–	1	2	3	2	2	69
허위·과장표시		–	–	–	–	–	–	–	1	–	–	–	1
수출입질서저해		63	1	–	–	–	1	–	–	–	–	–	65
계		**101**	**9**	**4**	**3**	**6**	**5**	**4**	**6**	**9**	**10**	**11**	**307**

별첨 2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('95~'11, WTO 통계)

□ 연도별 무역구제 조사개시 추이

(단위 : 건)

구 분	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계
반덤핑	157	226	246	266	358	298	372	315	234	220	201	204	165	213	209	171	155	**4,010**
상계관세	10	7	16	25	41	18	27	9	15	8	6	8	11	16	28	9	8	**262**
세이프가드	2	5	3	10	15	25	12	34	15	14	7	13	8	10	25	20	9	**216**

□ 반덤핑

구 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비 고
제소국(건수)	인도(656)	미국(458)	EU(437)	아르헨티나(291)	호주(235)	**한국(111) 11위**
피소국(건수)	중국(853)	**한국(284)**	미국(234)	대만(211)	일본(165)	-

□ 상계관세

구 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비 고
제소국(건수)	미국(109)	EU(60)	캐나다(25)	남아공(13)	호주(11)	**한국(0)**
피소국(건수)	인도(50)	중국(46)	**한국(18)**	이탈리아(13)	미국,인니(12)	-

□ 세이프가드

구 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비 고
제소국(건수)	인도(26)	터키, 요르단(15)	칠레, 인니(12)	미국(10)	체코, 필리핀(9)	**한국(4)**

□ 미국(ITC) 지재권침해조사

(단위 : 건)

구 분	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
지재권	11	13	13	11	9	17	24	17	18	26	29	33	35	41	31	56	69

별첨 3 주요국의 무역구제제도 개선 현황

□ 미국 : Trade Law Enforcement Package('10.8)

○ 반덤핑·상계관세조치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비시장 국가(non-market economy)의 불공정수입을 차단하여 5년내 수출 2배 증진 및 일자리 창출

< 주요 발표내용 >

① 반덤핑 조사대상 기업 선정시 수출물량 기준뿐만 아니라 무작위 추출법 적용으로 기업들 확대 적용

② 비시장 국가의 재판매 업자 및 비조사 기업도 관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강화

③ 반덤핑 관세는 연속 3년, 상계관세는 연속 5년간 Zero Margin을 부과받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철폐

④ 상무부 예비판정에 따른 반덤핑 관세에 대해 수입업자가 담보 대신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등 14개 조항

□ EU : 무역구제조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컨퍼런스 개최('12.5)

* High-Level Conference on Modernization on Trade Defence Instruments

○ 각국의 광범위한 금융·원자재 지원정책, 세계 수출에서 선진국 비중 및 일자리 감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 개선을 검토

< 주요 검토내용 >

① 중국 제품에 무역구제조사가 개시될 경우 중국의 보복위협으로 인해 해당 EU 산업대응이 위축되는 점을 감안, 직권(ex-officio) 조사 확대를 검토

② EU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지급 또는 국가 개입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계관세 사안에서는 최소부과원칙* 적용 배제를 추진

* 최종 덤핑방지관세을 결정시 덤핑마진과 산업피해구제수준(피해마진) 중 낮은 것을 부과

□ 호주 : 반덤핑·상계관세제도 효율화 방안 발표('11.6)

○ 노조·업종별 단체 등에서 외국 덤핑제품으로 호주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무역구제제도 도입을 추진

○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신속한 잠정조치 허용, 산업피해 산정범위 확대, 덤핑조사 인력 충원 등 제시

별첨 4 무역위원회 주요 판정사례

1 일본, 인도,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 반덤핑 조사

□ 조사개요

○ 신청업체 : (주)창원특수강

* 매출액 11,405억원('05년 기준), 종업원수 1,1462명, 판매량 797천톤/년(국내88%, 수출1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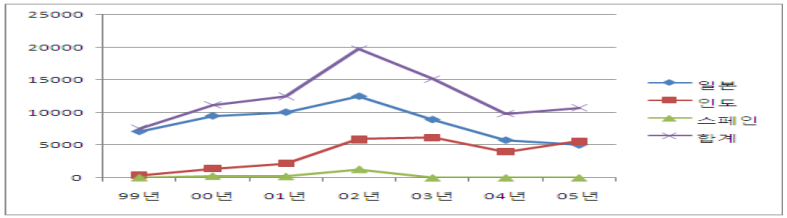
○ 제소과정 : '03.5.12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 → '03.12.8 예비긍정판정 → '04.6.30 최종긍정판정

○ 구제조치 : 5년간('04.7.30~'09.7.29) 15.39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

□ 무역구제조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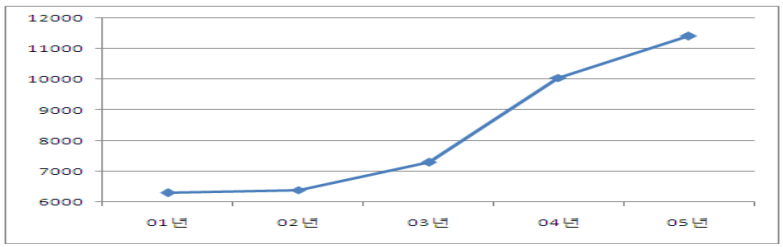
○ (수입량) '02년 최고치(19,732천톤)를 기록하고 조사신청('03년)이후 감소추세

(단위: 천톤)



○ (매출액) 조사신청이후 매출액 급증('03년 7,296억원→ '05년 11,405억원)

(단위: 억원)



2 싱가폴, 중국, 일본산 알카리망간 건전지 반덤핑 조사

□ 조사개요

○ 신청업체 : (주)로케트전기, (주)서통

* 매출액('98년 기준) : (주)로케트전기 1,112억원, (주)서통 2,326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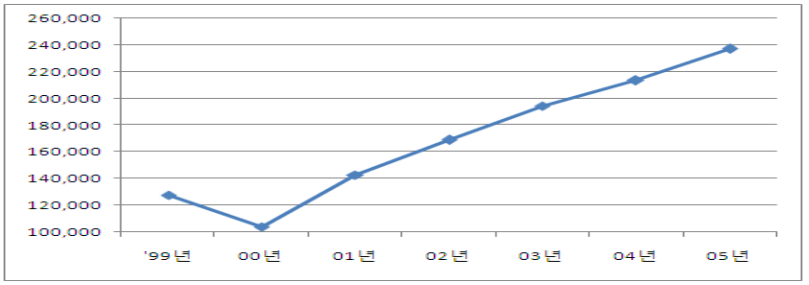
○ 제소과정 : '99.8.31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 → '00.3.15 예비긍정판정 (잠정덤핑관세부과) → '00.9.15 최종긍정판정

○ 구제조치 : 3년간('00.4.15~'03.4.14) 26.7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

□ 무역구제조치 효과

○ (판매량) '99년 대비 '05년 86%증가(127,569천개 →237,143천개)

(단위: 천개)



○ (R&D) 그간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집중하지 못했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, PAPER전지를 개발

3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반덤핑 조사

□ 조사개요

○ 신청업체 : (주)한솔케미칼

* 매출액 1,512억원('03년 기준), 종업원수 320명, 생산량 9,958톤/년(국내91%, 수출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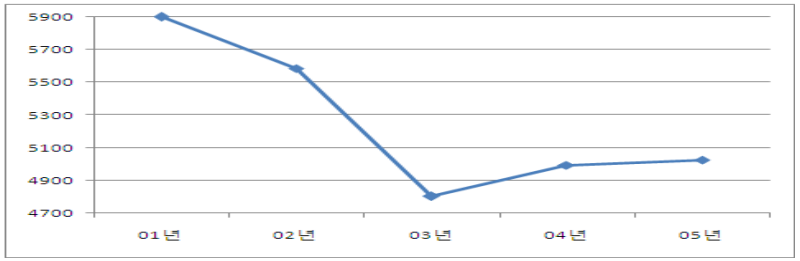
○ 제소과정 : '03.6.9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 → '03.12.15 예비긍정판정
→ '04.5.12 최종긍정판정

○ 구제조치 : 3년간('04.6.23~'07.6.22) 11.78~21.07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

□ 무역구제조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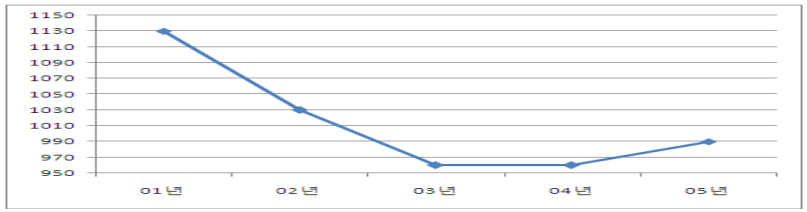
○ (판매량) '03년 대비 '05년 4.8% 증가(4,803톤 → 5,033톤)

(단위: 톤)



○ (판매가격) '03년 대비 '05년 3.1% 상승(960천원→989천원)

(단위: 천원)



4 PDP 디스플레이장치 특허권침해 조사

□ 조사개요

품 목	PDP방식 디스플레이장치				
신청일자	'04. 11. 2	조사개시일자	'04. 11. 4	판정일자	'05. 4. 13
신 청 인	LG전자(주)				
피신청인	파나소닉코리아(주)				
침해유형	특허권 침해				
판정결과	조사신청 철회(화해)				

□ 조사경위

○ 日마쓰시타(松下)전기社가 Cross-License 협상결렬에 따라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동경세관에 LG PDP 통관보류 신청('04.11. 1)

⇒ 동경세관이 LG전자 PDP 통관보류 결정('04.11.11)

○ LG전자는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('04.11.2) 및 잠정조치 신청('04.11.12)

⇒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('04.11.4), 잠정조치 결정('04.11.29)

* 잠정조치 내용 : 대상물품의 수입·국내 판매행위 중지

○ LG전자와 마쓰시타는 Cross-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, 양사 관련 소송 및 무역위 조사신청을 철회하기로 합의('05.4.7)

⇒ 무역위, 철회요청을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하고 잠정조치를 해제('05.4.13)

□ 특이사항

○ 국내 기업의 해외 피해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효과적인 맞대응 조치

5 스케이트보드 특허권침해 조사

□ 조사개요

품 목	스케이트보드				
신청일자	'06. 7. 6	조사개시일자	'06. 7. 18	판정일자	'06. 10. 23
신 청 인	(주)데코리				
피신청인	(주)두발테크, (주)스포키, 신본통상(주)				
침해유형	특허권 침해				
판정결과	시정조치 명령				

□ 조사경위

○ (주)데코리는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(주)두발테크 등 3개사의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('06. 7. 6)

○ 두발테크는 특허심판원에 데코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('06. 9. 7)

○ 무역위원회는 두발테크 등 3개사가 데코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였다고 판정, 대상물품의 수입·판매를 중지하고 재고물품을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('06.10.23)

○ 두발테크 등 3개사는 데코리의 특허가 출원일 이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기술이고 동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이 계류중임을 이유로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('06.11.22)

- 무역위원회는 두발테크 등 3개사의 이의신청을 기각('06.12.18)

○ 특허심판원은 두발테크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두발테크의 스케이트보드가 데코리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심결('07. 3. 16)

□ 특이사항

○ 침해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해외공급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('10.7월 개정법률 시행)

6 LED(발광다이오드) 특허권침해 조사

□ 조사개요

품 목	LED 조명 제품 및 패키지 제품				
신청일자	'11. 7. 7	조사개시일자	'11. 8. 11	판정일자	'12. 6. 20
신 청 인	엘지전자(주), LG이노텍(주)				
피신청인	(주)오스람코리아, (주)바른전자, 다보산전(주)				
침해유형	특허권 침해				
판정결과	무혐의				

□ 조사경위

○ LG전자, LG이노텍은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의 오스람 LED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('11.7.7)

* (권리)특허권 7개, (조사대상물품)오스람 LED제품 15종

⇒ 오스람측도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LG이노텍의 LED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('11.7.28)

* (권리)특허권 4개, (조사대상물품)LG이노텍 LED제품 7종

○ 무역위원회는 오스람 LED 제품이 LG전자 등의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아,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가 해당 제품을 수입·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정('12.6.20)

※ 오스람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('12.4.25)

□ 특이사항

○ 국내외 대기업간 국제특허분쟁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에서 쌍방간에 맞제소한 최초의 사건

* LG, 삼성과 오스람은 한,미,일,독,중,영 등에서 20여건의 LED 특허분쟁중

○ 무역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한 판정을 위해 각각 주심위원단과 조사단을 구성·운영

* 조사단: 외부전문가(변리사, 특허청심사관, 전공교수 등 4인)로 구성